

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9. 7. 3.(수) / 총 5매
담당부서	건축문화경관과	담당자	·과장 이경석, 사무관 방대혁, 주무관 허연희 ·☎ 044-201-3775, 3778, 3782
보 도 일 시		2019년 7월 4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3(수),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공공건축 디자인이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됩니다.

- 국토교통부,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선·시행 -

- ❖ 생활SOC등 공공건축의 설계방향 설정 시 지역주민 요구사항 반영
- ❖ 가격경쟁 대신 디자인능력 경쟁을 통한 우수 설계자 선정

- 앞으로 생활SOC등 공공건축물은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 요구사항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우수한 디자인 능력을 가진 설계자를 선정하게 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4월 18일 발표한 「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방안」의 후속조치* 중 하나로 공공건축 설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 단계별 업무절차를 구체화한 「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」 전부개정안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* '3. 부처 지역개발·생활SOC 사업의 현장 실행력 제고'의 세부 개선방안으로 '각종 공공건축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디자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여 「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」에 규정' 포함

- (미흡사례1) ○○청사 신축사업 담당자인 A는 인접 시군에서 추진하였던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재편집하여 사업계획을 수립, 그 결과 지역 특성에도 부합하지 않고 주민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인접 시군과 유사한 디자인의 청사를 건립.
- (미흡사례2) □□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담당자인 B는 해당 사업의 설계자를 가격입찰을 통해 선정, 운찰제로 설계자를 선정한 결과 디자인 전문성이 떨어지는 설계자가 설계를 수행.

□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공공건축 디자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- 주민센터, 도서관, 학교, 어린이집 등 공공건축*은 주민 삶과 밀접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양적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획일적 디자인 및 사용자 불편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.

* 전국에 약 21만동 입지(기초지자체 당 900동), 매년 약 5천동씩 증가

※ 그간의 공공건축 디자인의 문제점

1. 특색없는 디자인: 남루한 타일 입면, 기둥·창문이 단순 나열된 입면
2. 공급자중심 계획: 관서장 중심의 공간, 부지확보 용이성만 고려한 입지
3. 사용자 불편: 출입구에 높은 계단 설치, 담장에 의한 주민통행 제한

- 특히, 교육부의 학교시설, 문체부의 문화체육시설 등 부처별로 다양한 공공건축 사업을 각각 추진 중이나, 각 부처는 사업별 양적 공급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양질의 디자인 구현을 위한 업무절차*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.

* 사업계획 사전검토, 설계공모, 설계자의 시공과정 참여 등

- 이에, 지난 4월 18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활용한 설계방향 설정 전문성 강화, 우수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절차 혁신 등 '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'을 마련하였으며,

-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각 부처 공공건축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디자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여 이번 「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」을 마련하였다.

□ 이번에 시행되는 「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」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(사업계획 내실화) 현재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,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'사업계획 사전검토*'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

*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 제20조에 근거, 발주기관이 작성한 사업계획서·설계지침서 등의 적정성을 설계발주 전에 공공건축지원센터(AURI)에서 검토

- 설계비 2억 원 미만인 공공건축 사업도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였다.

② (설계 발주방식 개선) 현재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제도를 우선 적용*토록 되어있으나,

*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 제21조에 근거

- 설계비 2억원 미만의 공공건축 사업은 아직 대다수가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방식을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고 있으며, 이에 소규모 공공건축*의 디자인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.

* 전체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건수 중 약 90% 차지('16년 기준, 나라장터)

- 또한, 지자체에서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, 해수부 어촌뉴딜300 등 지역단위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 전체의 계획 과 설계를 단일 용역으로 발주함에 따라, 사업 내 개별 건축물의 설계가 디자인 경쟁 없이 용역 수주업체의 하도급으로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.

○ 이에,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이 아닐지라도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방식을 지양하고 설계공모 등 디자인 경쟁을 통해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,

- 지역단위 개발사업에 건축물이 포함되었을 경우, 전체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서 개별 건축물의 설계를 별도로 발주하여 우수한 건축 디자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.

③ (민간전문가 지원 강화)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는 민간전문가가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완해주는 제도로서, '19년 6월 기준으로 전국 13개소*에 도입되는 등 전국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,

* 중앙부처 : 행복청 / 광역지자체 : 서울, 부산, 광주, 경북, 경남 / 기초지자체 : 경북 영주, 충남 부여, 충남 당진, 인천 서구, 경기 용인, 강원 춘천, 경남 진주(19년 6월 기준)

- 제도 확산 추세에 맞추어 제도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총괄·공공건축가가 기존 조직 내에서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·조정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.

○ 이에,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총괄·공공건축가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
- 지역단위 개발사업 및 생활SOC 사업(설계비 1억 원 이상) 등 국민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디자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는 공공건축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였다.

④ (공사 중 디자인 관리 강화) 현재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, 양질의 디자인 구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키도록 규정*되어 있으나,

*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 제22조에 근거

- 설계비 2억 원 미만인 공공건축 사업도 설계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건축주·시공사·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설계자가 시공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.

□ 이번에 개정되는 「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」은 7월 4일 발령 즉시 시행된다.

○ 국토교통부는 향후 ‘범부처협의체*’를 통해 이번 「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」의 이행을 각 부처별 사업시행지침에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.

*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공건축 관련부처(13개)로 구성, 디자인 개선방안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등 실시(5.24 발족)

※ 이번에 개정·시행되는 「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」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), 법제처 “국가법령정보센터”(www.law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방대혁 사무관(☎044-201-377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